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2. 3. 17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2년 3월 8일
- 회부일자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제4항 및 「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관련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없는 해당 조문을 삭제

4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(안 제4조제4호)
- 「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등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함(안 제4조제5호, 제6호 삭제 및 제8호 신설)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제4항에 따라 「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」 제4조의 심의사항을 대신하도록 함(안 제4조제7호)
- 그 밖의 조문 정비(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,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및 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조항의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예산과 기금에 관련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- 이번 본 조례 개정과 같은 회기 심사되는 제정·개정 조례안에 따라 통합·운영하게 되는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통합위원회명	통합 운영(심의) 위원회	비 고
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	충청북도교육청교육균형발전위원회	
	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	전부개정
	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	제정
	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	일부개정
	충청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	

- 지난 2020년 정부에서도 전체 행정기관 위원회 574개 가운데 16%인 89개 위원회를 정비한 사례를 볼 때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써 이번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됨.
- 다만,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더라도 각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에 일부 반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·합리성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